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준호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도자료
2024. 9. 26.(목)

제 목

청담동 주식부자 A의 범죄수익 122.6억 원 전액 환수

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(부장검사 유민중)는 '24. 9. 26.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**‘청담동 주식부자 A’**를 상대로 **122.6억 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(국고귀속)**하였습니다.

* A는 '20. 1.경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, 추징금 약 122.6억 원을 선고받았고, 당시 고급 주택 및 스포츠카, 명품, 고액 결혼식 등 A의 호화로운 생활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

■ 청담동 주식부자 A는 '22.경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만을 납부하고 이후 부터 사실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'24. 4.경부터 **각종 재산조회,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, 압수수색, 은닉재산 압류,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수를 집중 진행**하여 추징금 전액을 환수하였습니다.

■ 서울중앙지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범죄수익환수부가 설치된 청으로, **‘범죄는 남는 장사’**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**‘범죄수익 박탈’**이라는 중국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**환수 역량**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.

■ 앞으로도 검찰은 **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,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** 예정입니다.

1 사건 개요

● 대상자

- A(남, 38세, 소위 '청담동 주식부자')

● 유죄확정 범죄사실

- '15.~'16.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122.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【자본시장법위반 등】

● 사건 경과

- '20. 1. 30. 징역 3년 6월, 추징금 122.6억 원 선고 및 확정
- '20. ~ '22. 추징금 약 28억 원 납부 후 납부 중단(미환수액 94.6억 원)

2 환수 경과

- '24. 4. A 및 관련 법인 등의 재산조회 착수
- '24. 5.~ 9. 다각적 방법을 통한 추적 본격 진행

- ① 계좌수표 추적 : A 운영 차명법인 등 확인
- ② 해외 가상자산 추적
- ③ 은닉재산 압류 : 현금수표 3억 원, 가상자산 12억 원, 명품시계 등(별첨)
- ④ 차명 부동산(4억 원) 가압류,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
- ⑤ 압수수색 등 : 수십 억 상당 가상자산 및 차명 재산 등 확인

- '24. 9. 26. 94.6억 원 전액 환수(국고귀속)

3 향후 계획

-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므로, 재산 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(국고귀속)할 예정임 ☑

[별첨]

A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·수표·명품시계

